

보도시점 2023. 5. 18.(목) 12:00 배포 2023. 5. 18.(목) 07: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보주체인 국민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 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절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하였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개선
이용내역	①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이상 ②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①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②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div>
수집출처	①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②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 백신, 보안서버 등 용어 삭제, 저장·전송 시 암호화 외에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 추가 등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였다.

※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 발생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하였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3.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유출규모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이행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하였다.

* n번방 사건(’19년), 송파 살인사건(’21.12월),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22.9월) 등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1. 내부 관리계획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포함
2. 접근권한 부여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이 접근권한 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3. 접속기록	접속기록 저장·분석, 점검·관리 등을 통해 불법 접근 방지
4. 정보주체 통지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5. 전담부서·인력 배치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수 등을 고려 전담부서 운영 또는 전담인력 배치
6.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해 총괄관리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7. 공공시스템 협의회	운영기관, 수탁자, 주요 이용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등록 예외 : ① 일회적 행사 수행, ②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③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 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동의·통지>	개인정보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병남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종철 (02-2100-3055)
<과징금> <유출신고>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수 (02-2100-3101)
		담당자	사무관	장수용 (02-2100-3103)
<안전조치> <영상정보>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61)
		담당자	사무관	박 철 (02-2100-3067)
<국외이전> <중지명령>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변정수 (02-2100-2481)
		담당자	사무관	김성은 (02-2100-2482)
<분쟁조정>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00-3141)
		담당자	서기관	김용학 (02-2100-3146)
<처리방침> <영향평가>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대현 (02-2100-3081)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2-2100-3050)

붙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집 출처 이용·제공내역 통지 (영 제15조의2, 제1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시키고 통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동의를 받는 방법 (영 제17조제1항) 추가적인 이용·제공 (영 제14조의2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함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상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함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영 제1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되어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 제2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 등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 제27조의2, 제2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재난, 화재 등 상황'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영 제29조의7 ~ 제29조의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등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받은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기준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
안전성 확보 조치 (영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 (영 제30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정보주체에의 통지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함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0조의2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구 분	주요 내용
국내대리인의 지정 (영 제3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만 적용되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이 일반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함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영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저장·기록 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등으로 구체화함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 (영 제35조 ~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으로 명확히 함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영 제39조,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보호위원회(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분쟁조정제도 (영 제51조의2 ~ 제51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조정 사실조사 원칙 및 절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및 통지 방법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함
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범위 내'로 변경함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함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함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별표 1의5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화함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영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에서 공표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공표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3조,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별표 2의 부과기준에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함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 (※ 다만, 동의를 받는 방법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 특례 신설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